

## 선급의 독립성과 중립성

박문학\*

### Classification Society's Independence and Neutrality

Munhak Pahk\*

\* Korean Attorney, Sejin Lawfirm

**핵심용어** : 선급, 독립성, 중립성

**Key Words** : Classification Society, Independence, Neutrality

1. 한국선급의 국내법적 지위 및 활동의 근거
  - 민법 제32조, 비영리사단법인, 정관
2. 한국선급의 독립성 및 중립성 유지 근거
  - 국제선급연합회 절차규칙과 국제해사기구 공인선박검사기관규칙
3. 한국선급의 국내법적 지위와 위 국제규칙들의 규범적 관계
4. 한국선급 정관 제9조의 총회회원에 해운, 조선 등 관련 산업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제16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선급법인의 성격(독립성)에 위반하는지 여부
  - (1) 국내법상 검토: 민법 제40조 제6호, 민법 제42조, 민법 제73조 제1항
  - (2) 국제규칙의 내용
    - ① 독립성 관련 규정- IACS Procedures Volume 2:Procedures Concerning Requirements for Membership of IACS C1.1.2 규정
    - ② 중립성 관련 규정- IMO RO Code Article 2.3, 2.4
  - (3) 검토- ① 선급 이사회의 경우 / ② 선급 총회의 경우
5. 상법상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
6. 정관 제21조 제3항의 비상근 이사를 총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들이 제30조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국제규칙상 선급법인의 독립성을 위반하는지 여부
  - (1) 문제의 소재- 선출된 비상근 이사가 특정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급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
  - (2) 검토 - 현재, 선급의 정관에 의하면, 비상근 이사의 선출 및 의결권 부여에 있어 국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단위별 기준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. 2017. 6. 기준 비

상근이사 10명 중 해운계 이사가 5명이나 되지만 조선과 금융 및 해상보험계에서는 1명의 비상근이사도 없음. 이는 선급의 정관상 산업 단위별 비상근 이사 선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. 따라서, 비상근 이사의 선출 및 의결권 부여에 있어서도 산업 단위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### 7. 결 론

국가 미래 산업의 한 분야인 해사기술 산업의 통합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사기술의 도가니(Melting Pot) 이자 신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급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. 선급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위 산업(조선, 플랜트, 해운, 수산, 금융, 보험, 해운중개, 법률 등) 및 연 구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역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됨. 이러한 관점에서, 현재 한국선급이 단위별 해사 산업 주체들에게 사원(회원)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통로를 마련해 놓은 것은, 긍정적인 규범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음.

한편,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단위 산업 주체들과의 규범적 의사소통이 선급을 단위 산업 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예측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. 이것이 선급의 독립성 유지 및 강화의 문제임. 선급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,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상대적 가치에 의해 해사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음.

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, ① 선급의 독립성을 우선적 가치로 규정하는 내용의 명시적 정관 규정을 신설하고, ② 이사 선출과,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 부여에 있어 산업 단위별 기준을 적용하는 명시적 정관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 결정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더하여, ③ 감사의 자격 및 기능을 강화하면서 선급의 독립성 감시 업무를 감사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.

\* First Author : mhpahk@gmail.com